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청 원 법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청원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됨에 따라, 온라인 청원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과 공개청원의 의견수렴 방법,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 1) 청원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2)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름.

나. 온라인청원 및 온라인청원시스템(안 제5조 및 제6조)

- 1) 청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외에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음.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청원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청원의 신청·접수·결과 통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음.

다. 공개청원(안 제8조 및 제9조)

- 1)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은 청원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함.
- 2) 청원내용이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청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삭제 또는 비공개 할 수 없으나 공개 부적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

라. 청원 진행상황 통지(안 제10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여부 결정, 청원 처리 등 청원 진행상황에 대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함.

마.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안 제11조 및 제12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접수한 청원사항이 다른 청원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

바. 청원심의의 예외(안 제14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청원취지대로 청원심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

사. 처리결과의 통지(안 제15조)

청원 처리기간(90일)은 청원기관의 장이 소관 청원기관으로서 청원을 접수한 때부터 기산하고, 처리결과는 그 이유와 함께 문서로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아. 이의신청(안 제16조)

청원인은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청원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이의신청을 하되,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제출된 청원에 관한 이의신청은 전자문서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청원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간의 계산 등 청원 절차에 관한 사항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을 준용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30일의 기간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청원을 처리해야 하는 90일의 기간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이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60일의 기간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

제3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이

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호의 청원기관은 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원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소속 주무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심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청원기관의 소관 사무 및 행정권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청원심의회의 운영) ① 청원심의회는 청원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청원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의 신청·접수, 청원서의 이송, 처리결과의 통지
2. 공개청원 내용의 공개, 의견수렴 및 처리결과의 공개
3.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청원의 처리상황 안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청원이 소관 청원기관에 접수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소관 청원기관을 판단하여 해당 기관에게 접수를 권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분석, 가공 및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나 다른 청원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청원서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접수하고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청원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한 청원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요구, 이송 또는 반복청원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청원서에 보완이 필요한 부족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지 여부
3. 청원서의 내용이 법 제16조의 반복청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한 청원서의 청원사항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청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접수를 하여야 한다.

⑤ 청원기관의 장은 제출된 문서가 법 제4조의 청원기관, 법 제5조의 청원사항, 법 제9조의 청원방법 및 법 제11조의 청원서 이유와 취지 등 법에서 정한 청원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문서를 반려 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한 경우에는 청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공개청원 의견수렴) ①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에 대하여 국민

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온라인 청원시스템에 게시한 의견을 열람함으로써 그 청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된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청원서를 전자화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청원을 공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개된 청원에 대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고 의견을 작성,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에 대하여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심의회 심의 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심의회는 해당 청원의 심의에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청원 공개 기준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으로 신청된 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부적합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원 내용에 개인정보,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 등 법상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청원 내용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별개로 공무원 개인을 비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청원 내용에 상업성 광고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청원 내용에 욕설, 비속어나 폭력적, 선정적 내용 또는 음란물 등 불

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청원 내용에 온라인청원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나 설비를 훼손할 수 있는 파일이나 링크가 포함된 경우

6. 그 밖에 청원을 공개하는 것이 청원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청원기관의 장은 의견을 게시한 국민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게시된 의견이 제9조제1항의 공개 부적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게시된 의견이 공개청원에 대한 의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10조(청원 진행상황 통지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사실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2. 청원이 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다른 청원기관에 이송한 경우와 다른 청원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원서의 청원사항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원

을 접수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원이 처리된 경우
7.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원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한 경우

10. 기타 청원의 처리 상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문서로 하되,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개청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대하여 법 제4조의 청원기관, 법 제5조의 청원사항, 법 제9조의 청원방법 및 법 제11조제4항의 청원서 이유와 취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비추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청원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원 처리 기간에 포함된다.

제12조(청원서의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청원서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청원의 청원사항이 다른 청원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청원사항 중 일부가 다른 청원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의 복본을 만들어 소관 청원기관에게 송부함으로써 청원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송 받을 소관 청원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청원기관의 장은 각각의 청원기관에게 청원서의 복본을 송부함으로써 청원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의 취하)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하여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원서를 청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청원심의의 예외)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청원을 처리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해, 청원심의를 거치더라도 청원 처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 경우

3.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청원의 취지를 실질적,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경우

4.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청원인의 청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5.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청원 처리의 결과와 함께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기간은 법 제21조제2항의 90일 기간에 포함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90일의 기간은 청원기관의 장이 소관 청원기관으로서 청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문서로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제출

된 청원에 관한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청원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과 제5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참여혁신과	
연 락 처	(044) 205 - 2429